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

○ 당 초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 경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 061-749-72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환경부고시제2020-248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전화번호

라. 수원지(시·도/시·군·구/읍·면·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1의2.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5호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자”를 각각 “글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를 “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활자크기”를 각각 “글자크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재활용하는”을 “재사용하는”으로, “용기의 수원지 및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은 주 표시면 외에 별도의 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표시”를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99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의 도장방식은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 외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 외의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기의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설비를 부착

나. 가목에 따른 설비는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플라스틱 등의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가목에 따른 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도장외벽과 설비 사이 간격 10cm 이하)

라. 가목에 따른 설비와 분사기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가목에 따른 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